

순천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4. 07. 03.

개정 2017. 7. 1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) 명예졸업증서는 이 대학교 학부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.

1.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사람
2.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
3. 그 밖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3조(수여절차) 명예졸업증서는 해당 학과장의 신청으로(별지 3호 서식) 해당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장의 추천으로(별지 제2호 서식) 총장이 수여 한다.

제4조(수여시기)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이 대학교 학위 수여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수여자 관리)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자는 학적부에 수여 내역(수여일자 등)을 기록한다.

② 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.

제6조(수여자 대우) 명예졸업증서 수여자에게는 이 대학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.

제7조(수여취소) 명예졸업증서 수여자가 이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명예졸업증서 수여 사실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(2014. 07. 0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7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